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4. 11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4. 11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4.25)상정.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박노선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의 개정(2005. 1. 5)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함(안 제3조, 안 제28조, 안 제29조)
-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원가산정방식에서 시가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(안 제21조)
-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함(안 제18조, 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 제3조제1항 및 동조제3항

나. 입법예고 : 2005. 3. 11 ~ 3. 31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(2005. 1. 5)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맞추려는 것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있어 현 조례에 있는 종합토지세 관련규정(제28조, 제29조)을 삭제하고
-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원가산정방식에서 시가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, 관련규정을 정비 할 뿐 아니라
- 일부 불합리한 문자 또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